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목 차

□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운영	
I.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2
II. 중기재정계획 기본방향	6
□ 제2장 국가재정운용 계획	
I. 국가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9
II.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	15
□ 제3장 영암군 중기지방재정계획	
I. 영암군 기본현황	19
II. 영암군 재정현황과 재정전망	21
III.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주요 투자사업	25
<참고자료>	
1. 중기 세입 전망	35
2. 중기 자원배분 전망	38
3. 재정계획	41
4. 연도별 지방채 잔액	65
5. 부문별 현황	66
6. 세부 사업계획서	88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운영

I.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II.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방향

1 제도의 의의

□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제도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자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됨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

-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기초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의 경우
- ◇ 그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예산편성과의 관계

< 당초예산 >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수립이 원칙
-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여서는 안됨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

- 추경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후 편성·수립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투자사업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확정되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더라도 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에 의해 변경 가능
 -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수립 직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2. 근거규정 및 연혁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15.12.29. 공포)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연 혁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연도 변경(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연도)

3 수립 체계

□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수립 절차

①	행정안전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
③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④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⑤	행정안전부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
⑥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1 기본방향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정회의를 통해 경제전망 및 지방이전 재원 등 국가계획과의 연계 확인 및 조정
 -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
- 자치단체 중·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
 - 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자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주민, 지방의회, 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

② 대상 및 작성 기준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19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18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하되,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수립

※ 지방재정법 개정('14.5.28 공포)으로 계획수립 기간이 “당해”회계연도에서 “다음”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로 변경

○ ('20년도 이후) 중기계획의 '19년 규모 및 지역내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참조하여 작성

* 한 분야가 여러 국·과에 걸쳐 있는 경우는 부서별 총액을 토대로 작성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

* 투자계획 조정 시,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

제2장

국가 재정운용 계획

I.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II.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 여건

① 대·내외 경제 전망

1. 대·내외 경제 전망¹⁾

□ 세계경제 : 회복세 지속, 리스크 지속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전반적인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별 여건에 따른 성장 불균형 확대
- 글로벌 무역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 작용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세 계	3.7	3.9	3.9	3.8	3.8	3.7
- 선진국	2.4	2.4	2.2	1.7	1.7	1.5
- 신흥국	4.7	4.9	5.1	5.1	5.1	5.0

*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IMF, '18. 4, 7월)

□ 국내경제 : 소비·수출 증가세 지속, 성장세 소폭 둔화

- 세계경제 회복 및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수출증가세가 지속되나,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되며 성장세 소폭 둔화
-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 개선 등은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 다만,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 반도체 사이클 지속여부 등 불확실성 상존

1)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②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전략

□ 재정운용 방향

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

-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 투자하여 가시적 성과 구현
- 적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 대비 확장적으로 운용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5.8%

②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도 중점

- 양적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구조혁신 등 지출구조의 질적 전환 추진
-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 지속

③ 재정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의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을 강화

- 안전, 인권,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사업 심사·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추진
-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화, 정보 공개 수준 및 대상 심화·확대
-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및 중앙·지방 세출 기능 조정과 연계한 지방세 확충

□ 중기재정 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재정수입) '18~'22년 기간 중 연평균 5.2% 증가 ('17~'21 : 5.5%)
- (재정지출) '18~'22년 기간 중 연평균 7.3% 증가 ('17~'21 : 5.8%)

< 중기 재정수입 및 지출 전망 >

(단위 : 조원, %)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447.2	447.7	481.3	504.1	525.4	547.8	5.2
○ 국세수입	268.1	268.1	299.3	312.7	325.7	340.3	6.1
■ 재정지출	428.8	432.7	470.5	504.6	535.9	567.6	7.3
(증가율)	(7.1)	(8.0)	(9.7)	(7.3)	(6.2)	(5.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8~'22년 기간 중 △ 3% 이내에서 관리
- (국가채무)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

<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 재정수지**	△28.5	△33.4	△44.5	△54.2	△63.0
(GDP대비, %)	(△1.6)	(△1.8)	(△2.3)	(△2.6)	(△2.9)
■ 국가채무	708.2	741.0	790.8	843.0	897.8
(GDP대비, %)	(39.5)	(39.4)	(40.2)	(40.9)	(41.6)

*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 관리재정수지 기준

□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사회 분야) 청년일자리, 저출산,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투자를 확대
 -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 늘리고, 청년일자리 대책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복지)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인상, 노인·장애인 돌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돌봄부담 완화 및 일·생활 균형을 대폭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교육) 산학협력 지원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국립대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 (환경) 조기폐차 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생활화학제품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문화·체육·관광) 문화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성장기반 등을 구축하고, 문화향유 기회 및 생활체육 시설 관련 투자를 확대
- (경제 분야) 중점 투자방향 전환 등을 통해 내실화하되, 혁신성장 지원 등 미래 먹거리 확충에 중점
 - (산업·중기·에너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지원
 - (R&D) 기초연구·원천기술 중심 투자를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및 플랫폼 경제 집중 지원
 - (SOC) 도로 등 SOC는 지속적 투자로 스톡이 상당수준 축적되어 완공 소요 위주로 투자하고, 안전투자 등으로 내실화
 - (농림) 구조적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청년 농어업인력 육성 및 스마트 팜·양식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행정 분야) 국민안전 관련 투자 지속 확대

- (일반·지방행정)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정부 혁신을 추진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적극 뒷받침
- (안전) 미세먼지, 화학제품 등 환경위해 요소에 적극 대응하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

< 2018~2022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단위 : 조원, %)

구분	'18	'19	'20	'21	'22	'18~'22 연평균
총 지출	428.8 (7.1)	470.5 (9.7)	504.6 (7.3)	535.9 (6.2)	567.6 (5.9)	7.3
1. 보건·복지·고용	144.6 (11.7)	162.2 (12.1)	179.0 (10.4)	196.4 (9.7)	214.3 (9.1)	10.3
2. 교육	64.2 (11.8)	70.9 (10.5)	76.0 (7.2)	80.1 (5.3)	84.0 (4.9)	7.0
3. 문화·체육·관광	6.5 (△6.3)	7.1 (10.1)	7.4 (4.7)	7.8 (4.3)	8.0 (3.0)	5.5
4. R&D	19.7 (1.1)	20.4 (3.7)	21.4 (5.1)	22.6 (5.5)	24.0 (6.3)	5.2
5.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6.3 (1.8)	18.6 (14.3)	19.4 (3.9)	19.9 (2.8)	20.2 (1.3)	5.5
6. SOC	19.0 (△14.2)	18.5 (△2.3)	18.0 (△2.7)	17.7 (△1.8)	17.5 (△1.1)	△2.0
7. 농림·수산·식품	19.7 (0.5)	19.9 (1.1)	19.8 (△0.5)	19.7 (△0.5)	19.6 (△0.5)	△0.1
8. 환경	6.9 (△0.3)	7.1 (3.6)	7.0 (△2.0)	6.9 (△1.9)	6.7 (△1.8)	△0.5
9. 국방	43.2 (7.0)	46.7 (8.2)	49.9 (6.8)	52.8 (5.9)	55.5 (5.0)	6.5
10. 외교·통일	4.7 (3.5)	5.1 (7.5)	5.4 (6.8)	5.7 (5.7)	6.0 (5.1)	6.3
11. 공공질서·안전	19.1 (5.2)	20.0 (4.9)	20.9 (4.3)	21.7 (4.1)	22.6 (3.8)	4.3
12. 일반·지방행정	69.0 (9.0)	77.9 (12.9)	84.1 (7.9)	89.2 (6.1)	94.0 (5.4)	8.0

II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

① 지방자치단체 세입 여건

- 세계경기회복세에 따른 선진국·신흥국 경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설비투자가 둔화로 돌아서고,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수입액 증가 추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 미·중간 무역갈등 등 교역환경 악화, 국제유가 상승,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시장 여건 악화,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18년 전망) 지방세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택임주물량 증가, 지역경기 편차 등 여건변화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
 - 부동산 거래량은 2016년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

< 부동산 거래량²⁾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률(%)
토지 (필지)	2,044,9625	2,241,979	2,643,622	3,085,529	2,995,159	3,314,801	10.7
아파트(동·호)	716,714	876,465	1,071,295	1,225,864	1,134,747	1,294,151	14.0
건물 (동·호)	1,196,691	1,390,443	1,692,400	2,015,827	1,937,529	2,208,529	14.0

- 부동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세 유지

* 지가변동률³⁾(%) : ('14년) 1.96 → ('15년) 2.40 → ('16년) 2.70 → ('17년) 3.88

○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규정 마련 등 징수율 제고 유인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증가 예상

※ 지방교부세 : '18년 45.98조 → '19년 52.77조 (14.8% ↑)

* (국세동향) '18. 1~6월(잠정) 국세수입(157.2조원)은 전년 동기(137.9조원) 대비 19.3조원 증가(14% ↑)

<국세수입 전망>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국세수입	268.1	268.1	299.3	312.7	325.7	340.3	6.1
(증가율)			(11.6)	(4.5)	(4.2)	(4.5)	

○ (국고보조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

2)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통계정보

3)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통계정보

□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전망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실효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등 매입 추진에 따라 지방채무의 점진적 증가 전망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결정 시, 해당 토지는 타용도로 개발 제한(재산권 제한 발생)

< 지방채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방채 발행액	82,008	52,607	64,196	46,856	43,891
지방채 잔액 (증감률)	261,497 (△2.3%)	277,071 (△2.1%)	276,915 (△0.1%)	263,399 (△5.4%)	252,314 (△4.3%)

참고1 시·도별 부동산 거래량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률
전 국	토지(필지)	2,241,979	2,643,622	3,086,529	2,995,159	3,314,801	10.67%
	아파트(동·호)	876,465	1,071,295	1,225,864	1,134,747	1,294,151	14.05%
	건물(동·호)	1,390,443	1,692,400	2,015,827	1,937,529	2,208,529	13.99%
서 울	토 지	200,207	262,318	356,882	366,447	387,063	5.63%
	아파트	91,017	12,4778	156,337	155,052	165,213	6.55%
	건 물	192,289	251,753	343,644	354,682	374,120	5.48%
부 산	토 지	143,232	173,576	212,102	182,365	186,011	2.00%
	아파트	78,962	94,997	116,501	102,045	97,793	-4.17%
	건 물	127,221	151,904	187,257	162,630	166,219	2.21%
대 구	토 지	103,760	112,073	116,569	90,289	103,280	14.39%
	아파트	68,502	68,031	68,668	55,187	65,410	18.52%
	건 물	90,604	96,504	101,315	77,347	90,090	16.48%
인 천	토 지	94,158	115,716	144,811	150,130	186,285	24.08%
	아파트	48,244	60,455	70,935	65,922	78,078	18.44%
	건 물	81,565	100,573	124,755	129,259	161,772	25.15%
광 주	토 지	63,617	76,905	74,996	62,365	75,374	20.86%
	아파트	42,039	52,865	46,912	36,137	48,666	34.67%
	건 물	54,777	67,097	62,525	51,432	64,238	24.90%
대 전	토 지	46,666	54,630	53,378	52,131	55,681	6.81%
	아파트	29,737	36,067	31,739	32,204	35,624	10.62%
	건 물	41,691	48,539	45,185	45,818	49,537	8.12%
울 산	토 지	59,021	69,052	74,242	58,901	59,217	0.54%
	아파트	35,110	40,591	41,367	27,806	26,956	-3.06%
	건 물	43,840	51,788	53,894	38,024	38,544	1.37%
세 종	토 지	16,350	25,765	45,734	32,918	47,696	44.89%
	아파트	7,240	15,339	34,177	19,433	27,123	39.57%
	건 물	9,083	19,461	39,775	25,209	37,489	48.71%

참고1 시·도별 부동산 거래량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률
전 국	토지(필지)	2,241,979	2,643,622	3,086,529	2,995,159	3,314,801	10.67%
	아파트(동·호)	876,465	1,071,295	1,225,864	1,134,747	1,294,151	14.05%
	건물(동·호)	1,390,443	1,692,400	2,015,827	1,937,529	2,208,529	13.99%
서 울	토 지	200,207	262,318	356,882	366,447	387,063	5.63%
	아파트	91,017	12,4778	156,337	155,052	165,213	6.55%
	건 물	192,289	251,753	343,644	354,682	374,120	5.48%
부 산	토 지	143,232	173,576	212,102	182,365	186,011	2.00%
	아파트	78,962	94,997	116,501	102,045	97,793	-4.17%
	건 물	127,221	151,904	187,257	162,630	166,219	2.21%
대 구	토 지	103,760	112,073	116,569	90,289	103,280	14.39%
	아파트	68,502	68,031	68,668	55,187	65,410	18.52%
	건 물	90,604	96,504	101,315	77,347	90,090	16.48%
인 천	토 지	94,158	115,716	144,811	150,130	186,285	24.08%
	아파트	48,244	60,455	70,935	65,922	78,078	18.44%
	건 물	81,565	100,573	124,755	129,259	161,772	25.15%
광 주	토 지	63,617	76,905	74,996	62,365	75,374	20.86%
	아파트	42,039	52,865	46,912	36,137	48,666	34.67%
	건 물	54,777	67,097	62,525	51,432	64,238	24.90%
대 전	토 지	46,666	54,630	53,378	52,131	55,681	6.81%
	아파트	29,737	36,067	31,739	32,204	35,624	10.62%
	건 물	41,691	48,539	45,185	45,818	49,537	8.12%
울 산	토 지	59,021	69,052	74,242	58,901	59,217	0.54%
	아파트	35,110	40,591	41,367	27,806	26,956	-3.06%
	건 물	43,840	51,788	53,894	38,024	38,544	1.37%
세 종	토 지	16,350	25,765	45,734	32,918	47,696	44.89%
	아파트	7,240	15,339	34,177	19,433	27,123	39.57%
	건 물	9,083	19,461	39,775	25,209	37,489	48.71%

참고2 시도별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 국	1.14	1.96	2.40	2.70	3.88
서 울	1.21	2.66	2.69	2.97	4.32
부 산	1.57	2.28	3.09	4.17	6.51
대 구	1.68	3.15	4.06	3.93	4.58
인 천	0.87	1.35	1.95	1.74	3.10
광 주	0.75	1.31	2.87	2.82	4.17
대 전	1.01	1.84	3.11	3.45	3.36
울 산	1.37	1.85	2.52	2.35	3.54
세 종	5.50	4.53	4.57	4.78	7.02
경 기	0.91	1.24	1.73	2.23	3.45
강 원	1.29	1.76	2.64	2.92	3.82
충 북	1.02	1.69	1.90	1.92	3.08
충 남	0.78	1.39	1.51	1.90	2.98
전 북	1.04	1.58	2.31	2.15	3.33
전 남	0.96	1.80	2.80	2.60	3.90
경 북	1.49	2.42	2.65	2.54	3.09
경 남	1.49	1.97	2.23	2.36	3.09
제 주	1.42	3.73	7.57	8.33	5.46

참고3 지역내 총생산(GRDP) (통계청)

(단위 : 십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 국	1,377,041	1,430,255	1,484,542	1,565,248	1,641,957
서 울	313,479	318,607	327,607	344,426	359,449
부 산	67,999	70,338	73,744	78,238	81,264
대 구	43,021	44,754	46,592	48,869	49,758
인 천	62,208	64,654	68,374	75,675	80,859
광 주	28,914	29,763	30,998	32,516	33,922
대 전	30,884	31,456	32,737	34,062	35,945
울 산	70,783	68,348	69,548	69,674	72,197
경 기	288,147	313,671	329,449	352,857	373,329
강 원	33,853	35,357	36,886	39,566	41,738
충 북	43,628	47,402	49,137	52,656	56,661
충 남	95,308	99,154	103,740	111,266	117,075
전 북	40,432	42,513	44,623	45,641	46,895
전 남	64,642	62,289	63,095	65,454	68,577
경 북	85,401	89,132	91,653	94,988	99,351
경 남	95,635	99,619	102,484	103,995	107,962
제 주	12,707	13,198	13,894	15,366	16,986

② 지방자치단체 세출 여건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 전망
 -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비 마련 필요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청년·노인·아동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 혁신성장 지원,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핵심 선도사업 및 플랫폼 경제 지원 등 혁신성장 지원 증가
 - 그간 축적된 SOC 스톡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 보다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내실화 전망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 사회적 가치 실현, 안전 관련 투자 확대 전망
 -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실현·확산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분야 선제적 투자 확대

제3장

영암군 중기지방재정계획

I. 영암군 기본현황

II. 영암군 재정현황과 재정전망

III. 중기재정운용 목표

① 군정목표

민선7기 군정목표 · 방침 및 희망영암 7대 공약

군정목표 및 군정방침



희망영암 7대 군정공약

- 1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 건설
- 2 일자리 창출과 생동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 3 생명산업과 최첨단 농업 선도
- 4 항공 · 드론 ·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
- 5 문화관광 · 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
- 6 깨끗하고 쾌적한 일등영암 만들기
- 7 조화롭고 활기 넘치는 지역 균형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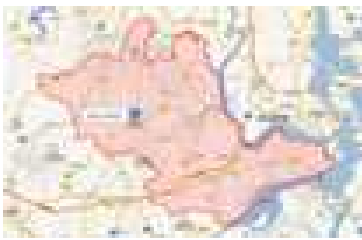
2 일반 현황

(2018년 1월 기준)



○ 인구 및 세대

- ▶ 55,797명 / 26,940세대



○ 면적

- ▶ 604.24km²
(농경지 37%, 임야 38%, 기타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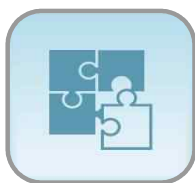
○ 행정구역

- ▶ 2읍 9면, 121법정리, 394행정리



○ 행정조직

- ▶ 2실 13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1읍·면
- ▶ 공무원 수 693명 ※ 군의원수 : 8명



○ 산업구조

- ▶ 1차산업 38%
- ▶ 2차산업 36%
- ▶ 3차산업 26%

1 재정현황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예산규모	395,586	415,403	441,385	488,456	512,975	7.42
일반회계	351,903	366,296	392,299	431,385	460,912	7.75
특별회계	43,683	49,107	49,086	57,071	52,064	4.80

※ 2014~2017년은 최종예산, 2018년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 최근 5년간의 재정규모는 '14년 3,956억원에서 '18년 5,130억원으로 증가추세이며 연평균 7.42%의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음

【최근 5년간 세입구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액	자 체 재 원			의 존 재 원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소 계	지방세	세외 수입	소 계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국도비 보조	
2014년	395,586	69,479	39,600	29,879	289,815	142,539	4,101	143,175	36,292
2015년	415,403	66,623	43,121	23,502	300,075	143,303	4,801	151,971	48,705
2016년	441,385	66,920	41,814	25,106	336,682	164,964	6,348	165,370	37,783
2017년	488,456	64,560	41,952	22,608	376,545	205,754	5,659	165,132	47,351
2018년	512,975	65,279	40,365	24,914	399,267	223,105	5,697	170,465	48,430

※ 2014~2017년은 최종예산, 2018년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 2018 세입 구성비는 자체재원이 12.8% 의존재원이 77.8%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4%를 차지하고 있음

② 중기재정운용 전망

□ 총 재정규모 : 연평균 3.0% 증가 전망

【연도별 예산규모 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440,420	453,633	467,242	481,259	495,697	2,338,250	100.0	3.0
일반회계	353,068	363,660	374,570	385,807	397,381	1,874,486	80.17	3.0
특별회계	41,332	42,572	43,849	45,165	46,520	219,437	9.38	3.0
기 금	46,020	47,401	48,823	50,287	51,796	244,326	10.45	3.0

※ 2018년 본예산 기준

-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 등 대외 여건의 점진적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 등으로 저성장 흐름에서 점차 탈피하고 국내 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사회복지 수요, 경기둔화 대응 등에 따른 새로운 지출소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 재정규모는 본예산 기준 연평균 3.0% 신장 예상

세입 여건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 연평균 3.0% 증가 전망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 연평균 3.0% 증가 전망

【연도별 세입규모 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94,399	406,231	418,418	430,970	443,900	2,093,918	100.0	3.0
자체재원	61,571	63,418	65,321	67,280	69,299	326,889	15.6	3.0
지방세수입	40,365	41,576	42,823	44,108	45,431	214,303	10.2	3.0
세외수입	21,206	21,842	22,497	23,172	23,868	112,586	5.4	3.0
이전재원	319,291	328,870	338,736	348,898	359,365	1,695,159	81.0	3.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537	13,943	14,361	14,792	15,236	71,870	3.4	3.0

※ 2018년 본예산 기준

- 지방세는 경기침체 및 조선업의 회복세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정비 등 지방세제 개편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됨
-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재원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세외수입징수대책반운영, 자체세입확충 의지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될 전망
-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복지지출 등 의무 지출 소요 증가 전망에 따라 다소 증가가 예상되며,
-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등으로 내국세 세입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대외 경제상황의 회복세로 예년보다 다소 증가 전망

세출 여건

- 경상지출(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연평균 3.0% 증가 전망
- 투자가용재원 : 연평균 3.0% 증가 전망

【연도별 세출규모 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94,399	406,231	418,418	430,970	443,900	2,093,918	3.0
경 상 지 출	80,541	82,957	85,446	88,009	90,650	427,603	3.0
재 무 활 동	11,844	12,199	12,565	12,942	13,331	62,881	3.0
행정운영경비	63,143	65,037	66,988	68,998	71,068	335,235	3.0
예 비 비	5,554	5,721	5,892	6,069	6,251	29,487	3.0
투자가용재원	313,858	323,274	332,972	342,961	353,250	1,666,315	3.0

※ 2018년 본예산 기준

- 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 등 경직성경비와, 출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 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조선업경기침체지역 관광활성화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문화체육 및 시설 부분의 신규 세출 요인 발생
- 중장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인 재정계획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
 -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 지양,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재정낭비 요인 제거
 -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성과평가 실시
- 민선 7기 공약사업 등은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명확히 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반영

① 중기재정운용 목표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 자원 배분
 -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 늘어나는 복지과 재난안전 등 지역개발 수요 부담을 적절히 안배
 - 전시행정·일회성 행사나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
- 계획적인 재정운영 지속 추진
 -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중점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 사후평가 및 분야별 한도제 도입
- 지역발전과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자원 배분
 -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문화관광체육 산업육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전략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 재원을 배분
 -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통합기반 강화에 집중
- 투자사업 책정 우선순위
 -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 우선 편성
 -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 마무리에 우선 책정
 -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 국가의 지역개발 연계사업
 - 기타 주민숙원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94,399	406,231	418,418	430,970	443,900	2,093,918	100.0	3.0
일반공공행정	20,159	20,764	21,387	22,028	22,689	107,027	5.1	3.0
공공질서및안전	1,526	1,572	1,619	1,668	1,718	8,102	0.4	3.0
교육	4,751	4,894	5,040	5,192	5,347	25,224	1.2	3.0
문화및관광	22,677	23,357	24,058	24,780	25,523	120,395	5.8	3.0
환경보호	46,555	47,952	49,390	50,872	52,398	247,167	11.8	3.0
사회복지	88,922	91,590	94,337	97,167	100,082	472,099	22.6	3.0
보건	8,208	8,454	8,708	8,969	9,238	43,577	2.1	3.0
농림해양수산	91,655	94,405	97,237	100,154	103,159	486,609	23.2	3.0
산업·중소기업	2,156	2,221	2,287	2,356	2,427	11,446	0.6	3.0
수송및교통	10,790	11,114	11,447	11,791	12,144	57,286	2.7	3.0
국토및지역개발	28,303	29,152	30,027	30,927	31,855	150,264	7.2	3.0
예비비	5,554	5,721	5,892	6,069	6,251	29,487	1.4	3.0
기타	63,143	65,037	66,988	68,998	71,068	335,235	16.0	3.0

